화성 동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화성동탄2 A6. A24. A77-2. A4-2블록]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15.]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4.15.(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가능)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순번은 기존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화성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단지	건설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A6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27 (영천동, 동탄2 LH1단지)	216호	′18.02
와잉 도타2	A24블 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영천동, 동탄2 LH4단지)	600호	'15.12
	A77-2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30-23 (산척동, 동탄2 LH35단지)	538호	′20.10
	A4-2블록	화성시 동탄영천로108-10 (영천동, 동탄2 LH2단지)	359호	′21.11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세대당 계약면적(m²)					7.7				
단지 주택형		형 전설 호수	주거	주거	그 밖의	의 공용		금회 모집	해당동	구조 및	계약
		오구	ㅜ/)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예비자수		및 난방	(예정)
힏	합계	1,641						245			
동탄2	23A	140	23.90	12.6740	1.7509	10.8019	49.1268	30	101		
A6	23B (주거약자용)	76	23.90	12.6740	1.7509	10.8019	49.1268	30	121		
동탄2	26A	516	26.89	13.1033	2.0451	13.7576	55.7960	40	421~427		
A24	26B (고령자형)	84	26.89	13.1033	2.0451	13.7576	55.7960	20	421	철근 콘크리트	
동탄2	26A	388	26.91	14.1899	1.6186	12.1980	54.9165	40	3501/3506	벽식구조	25년 9월
A77-2	26A1 (주거약자용)	150	26.91	14.1899	1.6186	12.1980	54.9165	30	3501	<i>/</i> 지역난방	예정
	22A	40	22.18	13.1903	2.4383	16,1227	53.9313	20	227		
동탄2	22B	74	22.14	13.1665	2.4339	16.0936	53.8340	20	229~231		
A4-2	27A	93	27.06	16.0924	2.9748	19.6700	65.7972	10	227		
	27B	80	27.70	16.4731	3.0451	20.1352	67.3534	5	230~232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 229동(22B형)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해당동 3층~5층 세대는 외부공간을 통하여 230동 엘리베이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형 신청자는 이를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를 위해 추가로 설치된 품목은 철거가 불가합니다.

단지	편의시설 설치내역
동탄2 A6BL(주거약자용)	현관·욕실·복도 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욕실 내 비상콜, 심야안전센서 벽부등
동탄2 A24BL(고령자형)	현관·욕실 손잡이, 높이 조절식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동탄2 A77-2BL(주거약자용)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내 비상콜
동탄2 A4-2BL(주거약자용)	현관·욕실 손잡이

■ 임대조건 ※ 신청자격에 따라「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나」군(일반 등) 임대조건이 적용됨

	, , , , , , , , , , , , , , , , , , ,			기본임대	조건(원)	전환가능	최대전			
단지	형별	적용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임대조건(원)		
		구분	계	계약금(5%)	잔금(95%)	걸음네표	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가」군	2,367,000	118,000	2,249,000	47 120	+ 2,000,000	4,367,000	35,460	
동탄2	23/	71」止	2,307,000	110,000	2,249,000	47,130	- 1,000,000	1,367,000	50,040	
A6	23B	「나」군	15,973,000	798,000	15,175,000	107,780	+ 11,000,000	26,973,000	43,610	
			13,373,000	7 30,000	13,173,000	107,700	- 12,000,000	3,973,000	142,780	
		「가」군	2,646,000	132,000	2,514,000	52,720	+ 3,000,000	5,646,000	35,220	
동탄2	26A/	/] ∟	2,040,000	132,000	2,314,000	32,120	- 1,000,000	1,646,000	55,630	
A24	26B	「나」군	17,168,000	858,000	16,310,000	124,040	+ 12,000,000	29,168,000	54,040	
			17,100,000	030,000	10,310,000	124,040	- 13,000,000	4,168,000	161,950	
		「가」군	고군 2,768,000	138,000	2,630,000	55,150	+ 4,000,000	6,768,000	31,810	
동탄2	26A/	\/ [2,030,000	33,130	- 1,000,000	1,768,000	58,060	
A77-2	26A1	「나」군	17,318,000	865,000	16,453,000	122,930	+ 12,000,000	29,318,000	52,930	
							- 13,000,000	4,318,000	160,840	
		「가」군	2,236,000	111,000	2,125,000	44,530	+ 2,000,000	4,236,000	32,860	
동탄2	22A						- 1,000,000	1,236,000	47,440	
A4-2	227	「나」군	14,289,000	714,000	13,575,000	104,820	+ 10,000,000	24,289,000	46,480	
			14,209,000				- 11,000,000	3,289,000	136,900	
		「ル.マ	「가」군 2,	2,232,000	111,000	2,121,000	44,450	+ 2,000,000	4,232,000	32,780
동탄2	22B	, I] IF	2,232,000	111,000	2,121,000	77,730	- 1,000,000	1,232,000	47,360	
A4-2	220	「나」군	14,191,000	709,000	13,482,000	103,890	+ 10,000,000	24,191,000	45,550	
		-1.7 [14,131,000	703,000	13,402,000	103,030	- 10,000,000	4,191,000	133,050	
		「가」군	2,727,000	136,000	2,591,000	54,330	+ 4,000,000	6,727,000	30,990	
동탄2	27A	, I] [F	2,121,000	130,000	2,331,000	54,550	- 1,000,000	1,727,000	57,240	
A4-2	217	「나」군	17,404,000	870,000	16,534,000	127,580	+ 13,000,000	30,404,000	51,740	
			17,404,000	870,000	10,554,000	127,300	- 13,000,000	4,404,000	165,490	
		「가」군	2,792,000	139,000	2,653,000	55,610	+ 4,000,000	6,792,000	32,270	
동탄2	27B	/1.1 止	2,132,000	133,000	2,055,000	55,010	- 1,000,000	1,792,000	58,520	
A4-2	2/D	「나」군	17 706 000	000 000	16 007 000	120 /10	+ 13,000,000	30,796,000	54,570	
		니고	17,796,000	889,000	16,907,000	130,410	- 13,000,000	4,796,000	168,32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5. 6.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나목)
 -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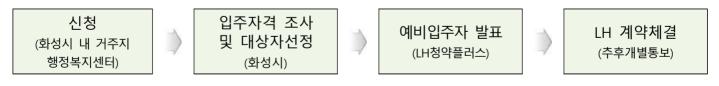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025. 04. 28.(월) ~~ 2025. 05. 02(금) (09:00~18:00)	화성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025. 07. 29(화) (17:00 이후)	단지별 개별 안내 예정 ('25년 9월 계약 예정) *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임시)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화성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예비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u>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u> 상실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니머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u>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u>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를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 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중<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u>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111100-101 (1110-10)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 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 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소득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 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금액(우대비율 적용)

입주자격 구분	위	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5. 입주자 선정방법]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참조	/ 기구전구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37,000,000	38,030,000	
	2인	0인	60%	237,000,000	38,030,000	
차. 일반입주자	2년	1인	70%	261,000,000	41,830,000	
사. 걸린 납구시		0인	50%	237,000,000	38,030,000	
	3인 이상	1인	6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70%	285,000,000	45,630,000	
	1인	0인	90%	237,000,000	38,030,000	
나. 국가유공자 등	2인	0인	80%	237,000,000	38,030,000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61,000,000	41,830,000	
바. (1순위) 장애인		0인	70%	237,000,000	38,03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285,000,000	45,630,000	
	1인	0인	120%	237,000,000	38,030,000	
	2인	0인	110%	237,000,000	38,030,000	
타. (2순위) 장애인	2 건	1인	120%	261,000,000	41,830,000	
니.(4판귀) 경에진		0인	100%	237,000,000	38,030,000	
	3인 이상	1인	11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120%	285,000,000	45,63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2024	1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99,082	2,158,898	2,518,715	2,878,531	3,238,348	3,598,164	3,957,980	4,317,797
2인	2,738,502	3,286,202	3,833,902	4,381,602	4,929,303	5,477,003	6,024,703	6,572,404
3인	3,813,487	4,576,184	5,338,881	6,101,578	6,864,276	7,626,973	8,389,670	9,152,368
4인	4,289,044	5,146,853	6,004,662	6,862,470	7,720,279	8,578,088	9,435,897	10,293,706
5인	4,515,524	5,418,629	6,321,734	7,224,838	8,127,943	9,031,048	9,934,153	10,837,258
6인	4,866,543	5,839,852	6,813,160	7,786,469	8,759,777	9,733,086	10,706,395	11,679,703
7인	5,217,562	6,261,074	7,304,587	8,348,099	9,391,612	10,435,124	11,478,636	12,522,149
8인	5,568,581	6,682,297	7,796,013	8,909,730	10,023,446	11,137,162	12,250,878	13,364,594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 액 261,000,000원,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기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입주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 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기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기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 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5.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순위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군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u>충족</u> 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 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u>을 충족</u> 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가」군	

1순위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 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 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2수의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하인 사람 : 「가」군	
2순위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 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지	ㅏ 선정순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Rightarrow	신청자 연령 높은 자	\rightarrow	추첨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5년 이상	30	
1. 화성시	10~15년 미만	28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까지 연속하여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
(30점)	1~5년 미만	24	(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년 미만	22	
	60세 이상	25	· 즈미드로파에 드게디어 이트 세념일이오 기즈이크 취
2. 신청자 연령	50~60세 미만	23	
(25점)	40~50세 미만	21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세 미만	19	
	5인 이상	30	
3. 세대구성원 수	4인	28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신청자 포함) (30점)	3인	26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인	24	

	15 (유형 3가지 해당시) 13 (유형 2가지 해당시) 11 (유형 1가지 해당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귀환국군포로
4. 가 점 (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고령자형)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고령자형)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시에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 대상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 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군
	1순위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주거약자 및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7日正
고령자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 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추첨

■ 주거약자용(고령자형)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합계	10	
	5년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 현재까지 연속하여
1. 화성시 거주기간 (3점)	1년이상~5년미만	2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0.2)	1년 미만	1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만75세이상	3	
2. 공급 신청자 나이 (3점)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기준으로 함
(° - /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1점)	2인 이상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1인은 0점에 해당
4 자에드그(2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4. 장애등급(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세네편 포함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5. 04. 15.)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는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용'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열람용'으로 제출 시와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시 부적격 처리) 예) 발급용(O), 열람용(X), 123456-1234567(O), 123456-*******(X)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 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부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영구임대[주거약자,고령자형]주택 신청서 선택)	1통 [별지1]			
	시양사 세금 중의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 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 불가	1통 [별지3]			
공통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기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4]			
서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 불가	1통 [별지5]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거소) 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u>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해당자	혼인 관련 서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배점 선택 시)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 양식, 별지6-1호 서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공사 양식, 별지6-2호 서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일 시 외국인등록증) (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만 제출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별지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71.5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1통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부 확인 서류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보훈부 행정복지센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 후 수령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 동복 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본인 도장(서명 가능)
대리인(배우자) 신청	-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본인(신청자) 도장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대리인(기타) 신청 [별지7]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mark>본인발급용</mark>),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위임장(공사양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날인 必),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본인(신청자) 자필 서명 必)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1

[※]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5.07.29.(화) 17:00
- 당첨자 발표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 전화(ARS(1661-7700)) : 1번(개인정보동의) → 1번(당첨자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가(예비입주자)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입주대상자 당첨 발표 후 공가 현황에 따라 예비 순번대로 개별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추첨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u>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자산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릅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순위에 상관없이 신청기간 안에 화성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 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 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복 입주 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자동차 등록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차량 등록이 원칙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세대별 차량등록 대수를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의 경우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기타 사항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 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구분	유의사항
기타 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동호열람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동탄2 A6블록] ■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에는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완료로 인해 전력구가 도로 밑에 시설되어 있으며, 기흥동탄IC 주변 및 단지 북동쪽 국지도 23호 주변에 철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 및 세대에서 철탑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화성동탄(2)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모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는 16.5m 도로를 사이로 공동주택이 위치하며, 단지 북측 및 동측으로는 근린공원이, 서축으로는 근린공원을 사이로 공동주택이 북동측에는 근린공원을 사이로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216세대) 및 국민임대주택(730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단지 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입구는 남측에 설치되며, 단지 중앙에는 중앙 마당이 설치되며, 단지 내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주민지원센터 등이 설치됩니다.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차량 차단기 소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주민지원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외부에 냉방기 실외기 설치로 일부세대에 소음 및 온풍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가 접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121동 옥상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동탄2 A24블록]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으로 공공공지 및 종교시설용지가, 서측으로 연결녹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가, 남측으로 폭원 16.5m 도로와 하천(치동천)이, 북측으로 경관녹지가 각각 위치합니다.
- 단지 남측 폭원 16.5m 도로에서 진입하며, 동측으로 국지도 23호선 중리IC가 위치합니다.
- 단지 남측(약50m 지점)에 국지도 23호선 중리IC로 진입하는 폭원 19.5m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동측 및 서측 인접 경계부는 경사면에 접하여 단지가 낮고 조경석 또는 옹벽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600세대) 및 국민임대주택(1,547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421동 및 427동은 영구임대주택 전용으로 계획되었고, 422동, 423동, 424동, 425동, 426동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혼합으로 계획되었으며, 부대복리시설을 공동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보육 시설은 429동과 433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425동 후면 단지경계부와 인접하여 분묘(종중납골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421동 저층부에, 문고 및 멀티프로그램실은 424동 저층부에, 경로당 및 관리사무실은 427동 저층부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공동작업장 등)은 429동 저층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436동 측면 지하)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가 427동 옥상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동탄2 A77-2블록]

■ 단지 외부여건

- 단지에 인접한 국지도23호선 등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소음(진동)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에는 동탄일반산업단지, 화성동탄물류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신리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공동주택(A76-2, A78BL)의 공사착공은 2022년 이후로 예정되어있으며, 입주 이후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분진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지구외 구간에 물류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주변을 방문하여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동 물류단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한원CC 및 북리 저수지가 위치하고, 서측에는 동탄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차단기 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상가 및 아파트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필로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가로등, 보안등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수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가 접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약하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되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698대입니다.(상가 7대 별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3501동, 3502동, 3503동, 3507동)는 차량 차단기 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차정차구간, 횡단보도 위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3501동, 3506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3501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는 3503동, 3505동, 350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크기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3501, 3507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가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되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열교환기실1, 열교환기실2가 설치되어 근접동(3501동, 3505동, 3506동, 3507동)은 열교환기 및 펌프 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어린이집,경로당,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사회복지시설) 시스템에어콘 실외기가 건물지붕에 설치 되므로 근접동(3501동, 3503동, 3507동)은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세대로 전달 및 조망이 저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소방 제연 휀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의 경우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2 A4-2블록]

■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교량·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공공청사 설립 계획 등은 사업추진 중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주변 아파트 단지 공사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 외부인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 등 행정관련 기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동탄JC 인근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를 설치하여 냄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 설비 (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예외 : 국민임대 46B는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계획,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문양 및 색상,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지정시 동일평형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복층세대 및 저층동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칭 동표시 아파트 문양 BI로고 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내 보안등, 가로등의 설치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저층부 세대(1∼3층 등)의 복도창호는 기준층과 창호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1~3층 등)의 세대 복도는 천장높이가 기준층보다 낮게 시공됩니다.
- 자전거 보관대가 필로티 밑 또는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동의 1층 일부는 필로티로 시공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주방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 또는 경사로, (보강토)옹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시공구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단지출입구,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고저차 및 단지여건상 도로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경사도가 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343대입니다.(아파트 : 1,335대, 상가 : 4대, 유치원 : 4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 입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우수저류조,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지하주차장 등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는 덮개가 없으며, 트렌치 내부는 구배가 없어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참조)
- 배수펌프가 아파트 PIT층에 설치되고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PIT층 및 옥상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 동통합형입니다. (229동, 234동 및 각 동 일부 계단실 제외)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우수유입 및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경형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전기차 주차장이 혼합배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 등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등 단지 내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25동(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식당, 경비실), 227동(주민공동시설), 229동 (유치원), 230동(어린이집), 231동, 232동(사회복지관), 234동(경비실)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인접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보관함)가 설치되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접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5동 생활자원보관소는 필로티 하부(경로당 옆)에 한 개소가 있으나 배치도에서 224~524호에 의해 가려져서 표기할 수 없으므로 동호배치도에서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5동(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자치식당), 229동(유치원), 230동(어린이집), 231동, 232동(사회복지관 주방 /식당)의 주방배기는 당해층으로 배출되어 냄새가 인접세대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로당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내부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재활용품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각종 주민시설은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생활자원보관소, 환기창, 채광창 등) 및 마감재(벽체마감, 옥탑장식물, 몰딩)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에서의 소음 발생에 따라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인접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 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는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설치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u></u>	11-11-11-11-11-11-11-11-11-11-11-11-11-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와 면하는 교차로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225동~226동 인근)는 신호등을 운영하며, 삼거리 교차로(233동~234동 인근)는 무신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공공보행통로(225 ,228, 229, 230동 사이)는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유사시에 소방차전입용도로 사용됩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단지 내에는 상가 및 아파트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225동 경비실옆 택배보관실, 225동 관리사무소 옆, 227동 출입구 인근, 234동 경비실 옆 무인택배실에 설치됩니다.
-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 및 단지 출입구 인접세대(225,226,233,234동)는 차량 출입 시 바닥소음, 차량 차단기 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226,228,229,234동은 제외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231동, 사회복지관)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 시공됩니다.
- CCTV는 관련법령에 따라 단지출입구, 놀이터, 동 주현관, 동 옥상출입구, 승강기 내부,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일부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230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이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며, 227, 230, 231, 23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관련기관(KT, SKT, LGU+) 협의 후 전파강도측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외부복도 난간 및 옥상난간은 외부 강풍시 울림으로 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연결 복도 및 데크는 지붕이 시공되지 않으며 우기, 동절기 우수유입으로 인한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벽체 및 천장, 주동 외부벽체 등은 구조적 연결로 인한 EJ(Expansion Joint)가 시공되며, 해당부위의 마감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 229동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3층∼5층 세대는 외부공간을 통하여 230동 엘리베이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감리회사		
동탄2 A6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2 A24		금호산업(주)			
동탄2 A77-2		㈜금강주택 외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35-82-14276)	건축,토목,기계,조경			
⊊ Flo. ∧ 77. 0		신동아건설 금호산업(주)	/本人力 F F ON F		
동탄2 A77-2		- ㈜신화 F.E.ONE			
		㈜현대에너지, 주식회사 이에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유텔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휠체어 사용자		
712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十当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휠체어 사용자		
节目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시각 장애인		
71-1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기기 6세년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00-10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 (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 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 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액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 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총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ᆸᇴᄭᄱ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자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5. 문의처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4. 15.

화 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전수번호										
11+1			010411	7 () — L		^\1	71.			
신청 주택	단지명 주택형				구원수 아포함)						
신청인	성	경					주민등록번	<u> </u>			
	주 <i>:</i>	소	화성시								
	전화번호		휴대전화() 집 전 화()		-		화성시 전입	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부하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들이 70%						의 70% 을 말함 나람 				
		С	하이고, 자산요건을 충 	등족 하는	- 사람						
] 무결	주택세대구성원 		□ 총자	<u></u>	이하	Z	다동차가 ⁹	백 이하	
주택 및 자산 현황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	시장	귀하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표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5년 이상	30				
1. 화성시	10년이상~15년 미만	28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까지 연속	
거주기간	5년이상~10년 미만	26			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 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	
(30점)	1년이상~5년 미만	24			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1년 미만	22				
_	60세 이상	25				
2. 신청자 연령	50~60세 미만	23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 주민등 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요 (25점)	40~50세 미만	21			국표에 중세되어 있는 정원철털을 기군으로 함	
, ,	40세 미만	19				
3. 무주택	5인 이상	30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공급신청자 포함)	
3. ㅜㅜㅋ 세대구성원수	4인	28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	
(신청자포함)	3인	26			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30점)	1 ~ 2인	24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30점) 1~2인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기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안(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귀환국군포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기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안(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귀환국군포로 	
	총 점	l 점	I		<u>행정복지센터</u> 확인자 (인)	
화성시장 귀하						

영구	구임다	 [주]	거약자용.	교령지	·형)주틱	H :	공급신청	Ы ├─	접수번호
신청 주택	단지				주택형	-		가구원수 (태아포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	소	화성시						
	전화변	호	휴대전화(집 전 화()	-		화성시 전입일	년	월 일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신청 순위	3순위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순위	□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 시·도지/	나가 영구임대	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디	고 인정하는	사람
	5순위	배		선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 및 3급 이상의 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무주틱	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	액 이	하	□ 자동차가	액 이하
 주택 및 자산 현황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위와 같0	이 영구임[배주택 공급신	청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경	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표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5년이상	3					
1. 화성시 거주기간 (3점)	1년이상~5년미만	2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까지 연속 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1년 미만	1					
	만75세이상	3					
2. 신청자 연령 (3점)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15.)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65세이상~만70세미 만	1					
3. 무주택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1점)	2인 이상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공급신청자 포함)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4.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세대원 포함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세마면 ㅗㅁ		
	점			<u>행정복지센터</u> 확인자 (인)			
화성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mark>필수</mark>]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흥 등을 통하여 제흥된에 구입에용하는데 등의에입니까?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다. 수집근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u>국토교통부장관</u>	<u>주택소유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u>주택, 소득 및 자산,</u> <u>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청약신청일로부터
<u>사회보장정보원</u>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u>한국부동산원</u>	<u>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u>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u>5년</u>
<u>전산관리지정기관</u>	<u>임차인 중복계약 및</u>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 . .

화성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아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제공을 동의함 ¹⁾ 통보하지 않는 것에 (서명 또는 인)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_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기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l	무주택세	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 ⁽	 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급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이원보조그	예 🗆		원	[임차인]	<u> </u>	
	임차보증금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기타	L O U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자산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10011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d □		원	[출자자]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임대인]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부채		이역소 니		원	[차주]		
	장기카드 대 출	예 □ 아니오 □		원	[차주]		
	(카드론)	1-1		원			
이 호 2. 자산팀 가. 임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가.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	양권 : 해당 주	택 분양계약	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	지 분양대금 납	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다. 비		실사 조회내역	,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	량 및 가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화성시	장 /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	기남부지역	역본부장 귀하		
* 공공	주택 특별법 제5	 57조의 3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 21	성 명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 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 • 성명 : • 주민등록성 • 주민등록번 • 연락처 : 	호 :
□ (2) 대표신 •성명 : •주민등록번 •연락처 :	청인의 예비배우자 호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정보 금융 정보	상기 (1), (2)는 ()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상기 (1), (2)는 ()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하신 1	시장 / 하구투지즈택공사 경기난브지역보브장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 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u>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u>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 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 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20 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예비배우자 : (인)

화성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하

[별지7]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 시, ※자필작성)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 임 내 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단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신 청 인)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화성시장 귀하				